

# 대일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 협상에 관한 연구

이이범\*

iibeom@gwnu.ac.kr

## Contents

- I. 문제제기
- II. 기존연구 및 연구방법
- III. 청구권자금 세부 항목의 협상 과정
- IV. 원화자금의 규모와 용도
- V. 협상 성과에 대한 평가
- VI. 결론

## 1. 문제제기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한국정부가 대일 청구권자금으로 일본정부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무상자금 3억불과 유상 차관 2억불이었다. 5억불의 유무상 청구권자금은 10년간 분할하여 제공되었으며, 이 가운데 유상차관 2억불은 7년거치 13년 상환, 연 3.5% 이율의 조건이었다. 이러한 대일청구권 자금의 명목과 액수, 제공조건은 1962년 11월 개최된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합의되었다.<sup>1)</sup>

이렇게 합의된 청구권자금 5억불은 현금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었다. 1965년 6월 22일 청구권자금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 간에 최종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의 제1조를 보면, 청구권자금은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일본국의 생산물이란 일본이 생산하는 자본재를 의미한다.

\* 강릉원주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현대일본정치

1)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편(2008)『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Ⅳ』, 동북아역사재단, p.104.

그런데 이 생산물에 대한 규정은 청구권협정의 실행에 따른 부속 합의서 성격인 「제1의정서」의 제2조에서는, ‘자본재 및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기타의 생산물로 한다’고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동 의정서 제6조의 4항에서는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재수출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일본이 제공하는 생산물을 한국정부가 재수출하는 것은 원칙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권협정의 구체적인 실행에 관련하여 작성된 「합의의사록(I)」의 4항에서는, 2억불의 유상차관 가운데 한국의 ‘국내 자금’ 확보를 위하여, 일본대표는 1억 5천만불 이상의 ‘자본재 이외의 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합의의사록(1)의 7항에서는 일본국의 생산물이 가공되거나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기타 처리된 경우는 수출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권협정에서 청구권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일본국의 생산물’이, 제1의정서의 제2조 1항에서는 ‘자본재 및 양국 정부가 합의한 기타의 생산물’로 달리 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제1의정서 4항에서는 일본의 생산물의 재수출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서는, 합의의사록(I)의 7항에서 ‘가공하거나 한일 양국이 합의한 처리를 거친 것은 수출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던가? 그런데 청구권자금과 관련한 이들 3건의 협정서, 즉 청구권협정, 제1의정서, 합의의사록(I)은 1965년 6월 22일 동시에 합의되어 체결된 것들이다.

일본의 생산물과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에서 규정한 중요 사항을 관련 부속서와 합의서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더하여 이런 다른 내용을 합의했다고까지 부속서와 합의서에서는 명문화하고 있다. 이처럼 일견 모순되는 내용들이 여러 협정서에 나뉘어 합의된 것은, 공개되어 여론에 그대로 노출되는 청구권협정문에 사실대로 명시할 수 없는 합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3건의 협정서에서 이처럼 각각 다르게 규정된 내용의 핵심은 청구권자금으로 제공받는 일본의 생산물의 세부 항목과 생산물의 재수출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청구권자금을 통해 한국정부가 별도로 조성하려는 국내자금, 즉 원화자금의 인정 문제였다. 일본정부는 청구권자금의 명목으로 제

공하는 일본의 생산물을 자국에서 생산되는 자본재를 중심으로 제공하려고 했다. 그리고 제공되는 일본의 생산물이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을 금지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의 자본재보다는 원자재를 가능한 많이 도입하기를 원했다. 또한 청구권자금의 명목으로 일본의 생산물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원화자금을 조성하려고 했다. 대일 청구권자금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이런 입장차이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일본으로서는 기존의 정책내용과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청구권자금의 명목과 지원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가 1962년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금의 세목 협상이 1965년 6월 22일 한일회담의 타결시점까지 이어진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다. 한일 회담이 최종 타결되는 시점까지 청구권협정과 관련 협약서의 합의가 왜 지체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또한 한국정부가 대일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의 협상에 얼마나 집착했고, 그 성과가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해답도 어느 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에 관련하여 청구권협정과 관련 부속서와 합의서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연구는 부재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유무상 5억불의 청구권자금으로 대규모의 원자재를 도입하여 실제로는 9억불을 상회하는 외화자금을 도입하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한국정부가 원자재의 도입을 강하게 추진한 배경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또한 한국정부가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에 관련한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일본정부를 설득하여 무상자금 3억불 가운데 원자재 비율을 높였는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원자재의 도입을 통해 확보한 원화자금의 규모는 실제로는 어느 정도였고, 그 원화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에 관한 협상의 성과를 평가하겠다.

## II. 기존연구 및 연구방법

2005년 한일회담에 관련한 한국정부의 외교문서가 전면 공개되면서, 한일회담의 외교문서에 기초한 연구들이 크게 진전되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정부의 외교문서 전체에 대한 5권의 해제집이 발간된 것이 가장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sup>2)</sup> 한국의 대일 청구권자금에 관련한 국내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한일회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있으면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문서를 활용하여 청구권협상의 타결과정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선구적인 연구(이원덕 1996)가 있고, 청구권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연구(이현진 2011; 김태균 2005), 청구권의 성립과정의 연구(김광옥 1996)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회담 관련한 외교문서가 공개된 만큼, 이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는 향후 증가해갈 것이다.

그러나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에 관련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연구는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들, 즉 식민지배의 불법성, 개인재산권의 처리 및 청구권자금의 결정, 어업문제, 독도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화재반환 문제 등과 비교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이처럼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에 대한 협상과정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것은, 세부 항목의 협상 내용이 갖는 중요성이 잘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관련한 문헌 자료들이, 2005년 공개된 관련 외교문서들을 제외하고는 전무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의 대일 청구권자금의 명목과 금액이 1962년의 김종필·오히라 회담으로 타결되면서,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에 대한 협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라고도 판단된다. 실제로 1962년 말 타결된 5억불의 청구권자금은 당시 여론이 기대한 액수에 크게 못 미치는 실망스런 금액이었다. 또한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에 대한 협상은 주로 한일 양국 정부의 실무 협상단의 몫이어서 당시 여론으로부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청구권자금의 세목 협상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상당한 액수의 국내자금을 시급하게 확보해야만 했던 당시 한국의 협상단에게는 대단히 중

2)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편(2008)『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 II, III, IV, V』, 동북아역사재단.

요한 책무였다. 청구권자금의 세목 협상의 핵심인 ‘원자재’<sup>3)</sup>는 당시 한국정부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일본의 청구권자금이 당시의 한국경제개발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로 2005년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한국정부의 외교문서<sup>4)</sup>에 기초하였다. 청구권자금의 세목의 협상에 관한 외교문서는 청구권협상에 관련한 문서철 속에 산재해있다.<sup>5)</sup> 그리고 한국정부가 일본국의 생산물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제공하기를 원했던 자본재 대신에 가능한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의도와 배경은 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한 청구권자금의 활용에 관한 여러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이런 경제기획원의 의도는 외무부를 통해 대일 청구권자금의 세목 협상 지침으로 바뀌어 일본정부에 전달되었다.

청구권자금의 세목에 관한 한일 양국의 협상과정은 청구권 협상의 대표단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은 물론, 일본 내 한국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다양한 보고서 등에 산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건을 섭렵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분석하지 않는다면, 세목에 관한 협상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해가는 지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가 곤란하다. 그렇지만 청구권자금의 세목에 대한 최종 타결로 도입된 유무상 자금 5억불 가운데, 자본재와 원자재가 각각 연도별로 어느 규모

3) 청구권자금의 명목에 관련한 자본재와 원자재의 개념은 한일 양국의 청구권자금의 협상과정에서는 명백하게 정의되지는 않았다. 청구권자금에 관련한 여러 회의록이나 문건에서도 일관된 용어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 개념들을 대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자본재는 대규모 시설을 도입할 때 사용되는 기계류, 시설품, 부품 등을 의미했고, 원자재는 원료, 반제품의 원료, 소비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권자금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1966년 제정된 「한국의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본재란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재, 시설품, 부분품, 부속품, 시운전에 사용되는 원료 예비품과 이들 자본재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보험료 또는 시설을 하거나 조연을 하는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5항). 또한 원자재란 원료, 반제품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라고 규정했다(제2조 6항).

4) 2005년 한국측 외교문서 156권 35,354쪽이 공개되었는데, 이 문서들은 기본관계, 대일청구권, 어업협정, 재일한인법적지위, 문화제, 무역회담 등 대체로 주요 이슈별로 시기순으로 편철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일회담의 협상이 예비회담, 본회담, 실무회담 등 다양한 수준에서 불규칙하게 진행되었고, 문서들의 완성도에도 편차가 커 이슈에 따라서는 협상내용의 전체 윤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또한 문서의 작성 형태도 어려운 수기(手記), 복사본 등이 많아 판독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문서의 작성일자도 불명확하여 전체적인 이해가 어렵기도 하다.

5) 청구권협상에 관련한 문서들은 다른 의제들에 비교해 방대하다. 이러한 방대한 문서철 가운데 청구권자금의 세목 협상에 관련한 문서만을 가려내, 세목협상 과정의 스토리를 작성하기 까지 긴 작업시간과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밝힌다.

로 도입되어 어느 분야에서 사용되었는지는 1976년 경제기획원에서 발행한 『청구권자금백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 연도별 청구권자금이 당시의 한국의 경제성장과 외화관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도 분석되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2005년 공개된 한국정부의 외교문서들과 함께 본 백서는 주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또한 본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2005년 한국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한 외교문서가 전면 공개되고, 이들 문서들에 대한 해제집이 출판되었기 때문이었다.<sup>6)</sup> 해제집을 통해 여기 저기 산재된 청구권자금의 세목에 관련한 여러 외교문서와 보고서, 청구권 관련 회의록 문서들을 재확인하고 그 협상의 전후 문맥을 추론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Ⅲ. 청구권자금 세부 항목의 협상 과정

1962년 11월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의 대일 청구권 자금은 ‘일본국의 생산물과 일본인의 용역’으로 제공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러한 합의의 내용은 당시 일본정부가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 대하여 실시 중이던 전후 배상 방법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김종필-오히라 합의 이전부터 청구권자금을 현금으로 지불받기를 원했다. 한국정부는 김종필-오히라 회담 직후 일본정부의 전후 배상원칙이 현물주의와 자본재 우선주의라는 것을 알고 차선책으로 자본재 우선주의를 따를 계획이었다.<sup>7)</sup>

당시 군사혁명 정부였던 한국은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투자자금의 부족으로 추진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외화부족, 원자재의 부족 등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여기에 1963년과 1964년 2년 간은 군사정부의

6) 청구권자금 세목 협상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에서 편찬한 5권의 해제집 가운데 제3권의 제5부의 정치회담 예비절충과 제6부 속개6차 한일회담(1963~1964) 부분, 그리고 제5권의 제2부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의 보고 및 훈령 부분을 추적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7) 『한일경제문제에 관한 분석자료』(723.1JA, 한·일회담, 회의록 합의-미합의점 대사 작업, 1962. 7-9, No.735, 0092-0112)

민간이양, 집권 공화당의 내부 분열, 한일회담 반대시위의 격화 등으로 국내정치적으로도 혼란이 거듭되었다.<sup>8)</sup> 이처럼 국내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이 계속되면서, 한국정부는 청구권자금으로 도입될 유무상 5억불 자금을 조속히 도입해 무엇보다도 경제개발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해가려고 했다.

한국정부는 1963년 2월 들어서 제6차 한일회담을 위한 예비교섭 청구권관계회의를 개시하면서, 그해 3월 5일 구체적인 교섭방침을 처음 수립하였다<sup>9)</sup>.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청구권자금의 지급방식은 한국 측의 경제사정에 적합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50년대부터 일본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실시한 경제배상은 일본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일본의 자본재 수출과 일본기업의 해당 국가 진출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정부는 청구권자금의 도입 방식을 최대한 한국경제에 유리하게 결정하려고 했다.<sup>10)</sup> 둘째, 무상자금 및 유상 차관은 한국의 외환사정이 호전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던 물자 및 산업시설재를 일본의 무상자금과 유상 차관으로 충당하려고 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보유 외화의 부족 사태가 완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일본의 생산물과 일본인의 용역이 도입되더라도, 가능하면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의 생산물과 용역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무상자금의 도입 항목으로 일본정부가 선호하는 생산시설과 기계부품 같은 자본재는 최소화하고 대신에 비료, 철강재, 산업기계 등의 (완제품)원자재의 도입을 최대한 늘리려 했다. 넷째, 청구권자금으로 도입되는 물품은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일본 이외 지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필요할 경우,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의 해외 구입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8) 심지연(2004)『한국정당정치사-위기와 통합의 정치』, 백산서당, pp. 185-188.

9) 「대일청구권 세목 협정 교섭에 관한 기본 방침」(723.1JA,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청구권 관계회의 1963, No.747, 0063-0064), 「한일간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방침」(723.1JA,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청구권 관계회의 1963, No.747, 0065-0072)

10) 경제기획원(1963.12.9)「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협정요강(안)」, p.6.

이러한 한국정부의 교섭방침은 1963년 4월 제8차 청구권관계회의에서 정식으로 일본정부에 타진되었다.<sup>11)</sup> 그러나 1963년 청구권자금에 관한 한일 간의 구체적인 협상은 한국 국내 정국의 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1964년에 들어서 한국정부의 청구권자금 세목 협상의 방침은 좀 더 구체화되었다. 그해 3월 외무부가 작성한 「청구권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상 방침」<sup>12)</sup>을 보면, 일본정부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 형식의 대규모 시설의 지원보다는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한국의 경제개발에 유리한 투자용 자재(예컨대 비료, 산업기계, 철강재 등)를 가급적 많이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본재와 함께 수출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산업(농업,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기간공장의 건설)용 기계를 가능한 많이 도입하려고 했다.<sup>13)</sup>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프로젝트 형식의 자본재로만 보상을 받을 경우, 한국산업계는 일본산업계에 종속되고 국내시장은 일본상품의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했다. 또한 외화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구권자금의 명목으로 일본의 원자재를 도입하게 되면,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수입품목을 상당량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외화부족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었다.<sup>14)</sup> 한국정부는 1964년 5월 이후 국내시장의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양국의 수석대표간 비공식회의와 일본정부의 대 한국 2천만불 긴급원조에 관한 회담을 통해서, 원자재 도입을 확대해줄 것을 일본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일본의 자본재로 건설되는 공장을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라도 원자재가 절대 필요하다고 일본정부를 계속 설득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국의 이런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청구권자금으로 원자재 수입을 대체한다면, 무엇보다도 당시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던 원자재 무역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만약 한국이 청구권자금으로 원자재구입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미국정부

11) 「제6차 한일회담 예비절충 제8차 청구권관계 회합 회의록(723.1JA,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청구권 관계회의 1963, No.747, 0135-0137)

12) 「한일간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상에 대한 방침」(723.1JA,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청구권 관계회의 1963, No.747, 0065-0072), p. 66.

13) 경제기획원(1964.2.5.) 「대일청구권자금의 사용에 관한 방안(안)」, p. 6.

14) 「대일청구권 세목 협정 교섭에 관한 기본 방침」(723.1JA,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청구권 관계회의 1963, No.747, 0063-0064)



에 알려지면, 당시 한국내 수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공급해오던 AID 원조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거론하기까지 했다.<sup>15)</sup>

일본정부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공받는 원자재를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것까지도 인정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sup>16)</sup> 당시 한국정부로서는 대일 무역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외화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수출산업의 육성과 수출증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청구권자금의 명목으로 제공하는 일본의 생산물이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은 일본 국내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강하게 거부했다.<sup>17)</sup> 일본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전후배상의 과정에서 준수해온 '일본의 통상무역을 저해하는 물자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sup>18)</sup>

이런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에 관한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는 1965년 들어서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팽팽한 대립은 1965년 4월 3일 한국의 외무부장관과 일본 외상 간에 청구권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이 가조인되는 시점까지도 지속되었다. 1965년 3월 한국정부가 확정된 「대일청구권 교섭 세부 지침」을 보면, '일본국의 생산물과 일본인의 용역'의 선정에서 일본정부의 관여를 가능한 배제하면서, 일본의 자본재 도입으로 한국경제가 일본에 장기적으로 예측되지 않도록 소비재도입이 특히 요청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상 전략상 청구권협정 문안에는 자본재나 소비재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다.<sup>19)</sup> 한국정부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양국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여 청구권교섭의 대표 협정문의 내용으로는 쉽게 합의되기 어려웠

15) 경제기획원(1964)「대일배상 및 차관 수입방식에 대한 검토내용의 중간보고-배상의 인수절차와 국내처리문제-」, p. 13.

16) 「대일청구권 문제에 관한 세부 훈령」(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2 1965.43 가서명 이후, No.1468, 0001-0411), p. 44.

17) 일본이 전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맺은 전후 배상 내지 보상 조약에 일본이 제공한 '생산물 및 용역'은 제3국에 재수출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外務省賠償部監修·賠償問題研究会編(1963)『日本の賠償』世界ジャーナル社, p. 24).

18) 경제기획원(1964)「대일배상 및 차관 수입방식에 대한 검토내용의 중간보고-배상의 인수절차와 국내처리문제-」, p. 16).

19) 「대일청구권 교섭 세부 지침」(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2 1965.4. 3. 가서명 이후, No.1468, 0001-0411), pp. 0011-0027.

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한 세부 실행 합의안인 부속합의서나 교환각서의 내용이라면, 일본정부의 양보를 얻어 내기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정부는 1965년 5월부터 시작된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자재 도입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역설했다.<sup>20)</sup>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원자재는 일본에서 생산되지 않아 일본도 부족한 외화를 사용해야 한다며 재차 거부했다. 또한 유상차관 2억불로는 원자재를 전혀 구입할 수 없고, 무상자금 3억불도 대부분 자본재를 제공하겠다고 종래의 주장을 좀처럼 굽히지 않았다.<sup>21)</sup> 그렇지만 한국정부는 대일 청구권자금이 자본재로 도입되어 국내의 일부 산업계 내지 일부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된다면, 국가 전체의 경제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능한 많은 원자재가 도입되어 원화자금이 조성되고, 이 원화자금을 다양한 분야의 근대화에 유용하게 활용된다면, 한국 국민 전체에게 공평하게 분점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sup>22)</sup> 또한 무상자금뿐만 아니라 유상차관 지원금에서도 원자재 구입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sup>23)</sup> 그리고 청구권자금 5억불로 시행하는 여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도 상당한 운영자금 즉 원화자금이 필요하며, 그 금액은 최소 1억 5천만불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sup>24)</sup>

이런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정부의 협상 대표단은 여전히 수긍하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정부가 원자재를 대량 구매해 청구권자금의 대부분을 원화자금으로 조성한다면, 원화자금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 쉽게 소비되어 일본의 청구권자금 지원의 성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갖고 있었다.<sup>25)</sup>

20)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3차 회의 보고」(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2 1965.4.3. 가서명 이후, No.1468, 0001-0411), pp. 0083-0087.

21)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3차 회의록」(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2 1965.4.3. 가서명 이후, No.1468, 0001-0411), p. 0092.

22) 同上, p. 0107.

23) 同上, p. 0096.

24)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4차회의 회의록(723.1JA 청 1965 V.2, No.1468, 0001-0478), p. 0118.

25)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4차 회의내용 보고」(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2 1965.4.3. 가서명 이후, No.1468, 0001-0411), p. 0108.

한국의 청구권자금 협상단은 1967년부터 실시할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유무상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구체적인 자금 활용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일본정부 협상단을 더욱 강하게 설득해갔다.<sup>26)</sup>

일본정부의 협상단은 한일회담이 마지막 협상국면으로 전개되면서, 한국정부 협상단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원화자금의 활용계획에도 관심을 표시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청구권자금의 지원은 한국 측의 사정을 참작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양 정부의 협의에 따라 자본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sup>27)</sup> 일본의 협상 대표단은 청구권협정에서는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주로 자본재로 한다'(제4조)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정과 동일하게) 일단 규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비공개외 교환공문에서는 양국이 협의해서 원자재의 비율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교환공문의 내용이라면 한국정부가 기대하는 원자재의 비율을 양국이 합의하여 결정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원자재의 재수출 문제에서도 가공수출이라면 가능하다고 양보했다.<sup>28)</sup>

결국 일본정부는 최종적으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1)」의 4항(a)에서, '사업 수행상 필요한 한국내 원화자금의 확보를 위해 유무상 지원 자금 중 1억 5천만불을 초과하는 자본재 이외의 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일본국 대표는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일본에서 도입되는 생산물의 재수출 또한 한국정부의 요구대로 인정되었다. 합의의사록(1) 7항(제1 의정서 제6조 4항에 관하여)에서 '일본국에 의하여 제공된 생산물이 가공(단순한 조립 가공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가공은 제외함)되거나 양 정부가 합의한 기타 처리된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규

26)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2 1965.4.3. 가서명 이후, No.1468, 0001-0411), pp. 0114-0127.

27)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일측이 제시한 회답문서 내용」(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2 1965.4.3. 가서명 이후, No.1468, 0001-0411), pp. 0131-133.

28)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과장급 전문가회의 보고」(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2 1965.4.3. 가서명 이후, No.1468, 0001-0411), pp. 0248-0250.

정했다.

#### IV. 원자재 및 원화자금의 규모와 용도

한국정부는 5억불의 청구권자금으로 도입되는 '원자재'와 '자본재'를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원화자금을 조성했다. 그 수익금은 청구권특별회계에서 적립되어 관리되었다. 한국정부가 관리한 관련 자금은, 무상자금, 공공차관자금, 그리고 원화자금 등 3가지였다.

한국정부는 원화자금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1966년 4월 확정된 「청구권자금관리 특별회계법」에 근거해 「청구권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했다. 이 특별회계는 「징수금계정」과 「차관계정」으로 구성되었다. 「징수금계정」의 세입은 무상자금으로 도입되는 원자재 및 기타 시설기자재의 판매수입, 용역의 제공을 통해 징수되는 금액, 기타 수입으로 조성되었다. 징수금계정의 세출은 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과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경비지출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제3조). 「차관계정」의 수입은 유상 차관자금의 전대금의 원리금회수, 차관자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원화금융자금의 원리금 회수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조성되었다. 차관계정의 세출은 경제개발을 위한 융자, 차관원리금 상환 및 기타 차관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로 한정했다(제4조). 이 2가지 계정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은 주로 경제개발자금과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1년간 어느 정도의 원화자금을 조성하였을까? 먼저 2가지 계정의 세입 누계액을 보면 1,641억원에 달했다. 즉 이 누계액은 일본의 유무상 청구권자금의 도입으로 조성된 원화자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이 2가지 계정의 연도별 세입의 추이를 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유무상자금 및 청구권자금 특별회계의 연도별 수입 내역  
(단위: 원화 백만원, 달러 천달러)

연도	무상자금		유상자금(차관)		원화자금
	도입액(\$)	징수금계정	도입액(\$)	차관계정	
1966	39,915	5,394	44,677	27	5,421
1967	34,668	10,079	27,389	363	10,442
1968	27,979	7,827	17,813	1,057	8,884
1969	24,059	10,681	11,070	1,836	12,517
1970	25,995	8,339	8,894	2,266	10,605
1971	29,205	6,239	8,000	3,069	9,308
1972	29,798	19,077	34,900	4,362	23,439
1973	29,613	13,781	5,004	6,075	19,856
1974	28,016	14,222	41,521	8,086	22,308
1975	30,752	18,280	732	9,533	27,813
1976		2,818		10,736	13,554
<b>합계</b>	<b>300,000</b>	<b>116,737</b>	<b>200,000</b>	<b>47,410</b>	<b>164,147</b>

\* 「청구권자금백서」의 표1-3-14(p.52) '청구권자금특별회계연도별입세내역'을 인용하여 환산함

이 표에서 각 연도별 무상자금과 차관의 도입을 보면, 먼저 도입 1-2년차에 금액이 매우 많았다. 이것은 청구권협정에서는 10년 분할하여 도입된다고 규정했지만, 외화부족에 시달리던 한국정부가 초기의 도입액수를 가능한 확대한 협상의 결과였다. 무상자금이 도입된 10년간 각 연도별 원화자금의 규모를 보면, 대체로 후반부로 갈수록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물품 가격의 상승에 따른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차관자금은 7년이라는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13년이었기 때문에, 원금 반환이 시작되는 1973년 이후에도 차관의 원리금 수입을 의미하는 원화자금은 증가했다. 물론 차관계정의 원화자금 세입은 청구권자금회계가 종료한 1986년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권자금 특별회계의 운영을 통해 1976년까지 확보한 원화자금의 대부분은 무상자금을 활용한 징수금계정의 수입이었다. 전체 수입금 1,641억원의 71.1%인 1,167억원이었다. 차관자금을 활용한 차관계정의 수입은 28.9%인 474억원이었다. 무상자금이 3억불, 차관자금이 2억불이었다는 것을 고려해도, 원화자금에 대한 무상자금의 기여도가 유상차관의 자금에 비교해 어느 정도로 높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무상자금을 통한 원자재

내지 소비재 도입 규모가 훨씬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 협상단이 유무상 자금 가운데 원자재의 도입 비율을 높이려고 왜 그렇게 노력했으며, 그 협상 성과가 얼마나 큰 국내자금의 확보로 이어졌는 지가 이해된다.

그리고 청구권자금으로 발생한 원화자금이 징수금과 차관 계정의 세부 항목 별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는 지가 표2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된다.

표 2: 청구권특별회계 징수금·차관 계정 항목별 원화자금 수입 내역('66년-'75년)

구분	항목구분	원화자금 누계액(백만원)	구성비
징수금계정	관수용물자대수입	15,722	9.6
	민수용물자대수입	14,466	8.8
	청산계정수입	15,485	9.4
	원자재판매수입	<b>47,461</b>	<b>28.9</b>
	시설물자현금수입	12,142	7.4
	기타수입	377	0.2
	예탁이자	315	0.2
	전년도이월금	10,769	6.6
	<b>소계</b>	<b>116,737</b>	<b>71.1</b>
차관계정	차관원금수입	17,302	10.5
	차관이자수입	23,588	14.4
	예탁금이자	956	0.6
	전년도이월금	5,564	3.4
	<b>소계</b>	<b>47,410</b>	<b>28.9</b>
청구권특별회계 총계		<b>164,147</b>	<b>100.0</b>

\* 『청구권자금백서』의 표1-3-14(p.52) '청구권자금특별회계연도별입세내역'에서 재작성

먼저 무상자금의 징수금 계정을 보면, 관수용 및 민수용 물자대, 청산계정, 원자재판매, 시설물자 현금 등이 주된 수입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입은 474억의 원자재 판매 수입으로 전체 원화자금의 28.9%를 차지했다. 이것은 1976년까지의 전체 차관계정의 총수입을 상회할 정도의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청산계정<sup>29)</sup>을 대체한 무상자금 4천 5백 7십만불의 관리에서도

29) 한일 양국이 1950년 6월 대한민국과 미군의 점령 하에 있던 일본 간에 체결한 재정 협정으로 한일 간의 상거래액을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시기에 대차변상 잔액초과액에 한해 현금결제하도록 규정한 한일통상청산계정(Korea-Japan open account)를 체결했다. 양국 간 청구권 금액 협상이 본격화된 1962년말 현재 4,573만 달러에 달했다(대한민국편(1965)『한일

154억의 수입이 발생했다. 그리고 차관 자금의 수입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방식의 도입 자금이 많고 전액 자본재로 도입되어, 거치기간 동안의 원리금 수입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청구권자금이 어떠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표3에서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무상자금 3억불의 도입 명목을 보면 자본재로 40.4%인 1억 2천 1백만불, 원자재로 44.3%인 1억 3천 2백만불이 각각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상자금으로 도입된 자본재는 농림분야 3천 6백만불, 수산분야 2천 7백만불, 광공업분야 3천 1백만불, 과학기술분야 2천만불로 각각 나누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유상차관 2억불은 광공업분야가 가장 많아 1억 1천 3백만불이 사용되었고, 사회간접자본에 8천 3백만불이 사용되었다. 유무상 5억불 전체로 묶어 산업부문별로 사용 내역을 보면, 광공업분야가 전체의 55.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전체의 18%가 투자되었다. 그리고 농림과 수산 분야가 각각 7.7%와 5.4%로 그 뒤를 이었다.

표 3: 청구권자금 사용 총액(단위: 천불)

부문별	무상자금		유상자금		합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b>자본재</b>	<b>121,316</b>	<b>40.4</b>	<b>200,000</b>	<b>100.0</b>		
농림	36,548	12.2	2,309	1.2	38,857	7.7
수산	27,176	9.1	-	-	27,176	5.4
광공업	31,438	10.4	113,725	56.9	277,988	55.6
과학기술	20,125	6.7	-	-	20,125	4.0
사회간접자본	6,029	2.0	83,966	41.9	89,995	18.0
<b>원자재</b>	<b>132,825</b>	<b>44.3</b>				
은행수수료	130	-			130	0.2
청산계정	45,729	15.3			45,729	9.1
계	300,000	100.0	200,000	100.0	500,000	100.0

\* 『청구권자금백서』의 표 I-3-2(p.31)와 통계편의 표 3(p.377)를 편집하여 재작성함  
 \* 분야별 합계에서 원자재는 그 대부분이 광공업분야의 자재였기 때문에 광공업에 포함시켜 계산함

그렇다면 원화자금의 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원자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들이었고 각각의 품목별 도입 비율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4와 같다.

원자재는 건축자재, 섬유류, 기계류, 화공약품, 비료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건축자재의 비율이 가장 높아 47.3%였고, 섬유류 21.4%와 기계류 19.4% 순으로 높았다. 그런데 원자재의 유형별로 중점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각각 달랐다. 청구권자금백서의 <표 II-3-19 : 원자재의 연차별도입현황><sup>30)</sup>을 보면 1966년부터 3년간 가장 많이 도입된 원자재는 섬유류였다. 전체 섬유류 도입액의 64%인 1천 8백만불이 집중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건축자재는 1973년에서 1975년 3년간 전체의 54%인 3천 4백만불이 사용되었고, 화공약품 또한 동일한 3년간 전체의 74%인 5백 7십만불이 사용되었다. 기계류의 경우는 각 연도 고루 도입되었다. 이처럼 원자재는 한국정부가 경제형편과 경제개발계획에 맞춰 자주적으로 구입 품목을 선정하여 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원자재의 도입 품목 현황

품목 유형	도입액(천불)	구성비(%)
건축자재	62,862	47.3
섬유류	28,448	21.4
기계류	25,758	19.4
화공약품	7,756	5.9
비료	8,000	6.0
계	132,824	100.0

\* 『청구권자금백서』<표 I-3-8>(p. 40)를 그대로 인용함

## V. 협상 성과에 대한 평가

앞선 제2장과 3장에서 기술했듯이, 한국정부가 청구권자금의 세목 협상에서 추진한 최대의 목표는 유무상 자금의 도입 과정에서 원자재 내지 소비재의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통해 한국 정부는 대일 청구권자금 협

30) 경제기획원(1976)『청구권자금백서』, p.221.



상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당시 국내시장은 원자재가 절대 부족해, 해외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 그 판매차익으로 막대한 원화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둘째, 국내에서 절대 필요했던 원자재의 경우, 외화지출을 통해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일본의 생산물로 대체할 수 있어 부족한 외화자금을 절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셋째, 원자재가 절대 부족하여 발생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파동을 일정부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넷째, 일본 생산물의 도입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권을 지켜갈 수 있는 원자재도입이 크게 증가하여, 한국산업의 근대화 초기 일본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일본에서 도입되는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을 일본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수출 진흥과 외화 획득의 성과도 거뒀다는 것은 명백하다.

일본의 청구권자금 도입이 가져온 국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청구권자금 백서』의 제4장(대일청구권자금의 부문별 기여)과 5장(대일청구권자금의 투자효과분석)에서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효과로서, 먼저 무역거래에 미친 영향을 보면, 1966-1975년간 청구권자금의 도입에 따른 수입액이 전체 무역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7%에 달했다.<sup>31)</sup> 또한 유상 차관의 도입 조건은 연 3.5%의 금리에 20년 상환이라는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만약 당시의 국제금리수준으로 동일 금액을 도입했다면, 원리금 부담액의 증가분은 4억 8천 7백만불에 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sup>32)</sup> 그리고 청구권자금이 사용된 포항제철, 중소기업지원, 산업기계확장, 수산업 등 4개 사업분야에서, 1966-75년 10년간 수출 및 수입대체로 개선된 국제수지개선 효과는 5억 2백만불(1970년 불변가격기준)에 달해, 유무상 도입자금 5억불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sup>33)</sup>

그렇다면, 한국정부가 조성한 원화자금 총액을 달러로 환산하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 한국정부가 조성한 원화자금의 총액은 앞선 표2에서 확인할

31) 同上, p.100

32) 同上, p.103

33) 同上, p.106

수 있듯이 1,641억을 넘었다. 각 연도별 원화자금을 당해연도 평균달러환율로 환산하면, 달러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환산한 연도별 달러금액의 내역은 표5와 같다.

표 5: 연도별 원화자금의 달러 환산 내역

연도	원화자금(백만원)	평균환율	원화자금 달러환산(천불)
1966	5,421	271.13	19,994
1967	10,442	270.53	38,598
1968	8,884	276.66	32,112
1969	12,517	288.33	43,412
1970	10,605	310.58	34,146
1971	9,308	347.68	26,772
1972	23,439	392.92	59,653
1973	19,856	398.33	49,848
1974	22,308	404.53	55,145
1975	27,813	484	57,465
1976	13,554	484	28,004
<b>합계</b>	<b>164,147</b>		<b>445,150</b>

\* 평균환율은 당해연도 적용환율로 한국은행통계에서 인용.

\* 원화자금단위: 백만원, 달러환산금액 단위: 천불

이렇게 환산한 결과 1966년부터 1976년까지 한국정부가 연도별 조성한 원화자금의 달러 환산금액의 누계는 4억 4천 5백만불을 상회했다.

## VI. 결론

대일 청구권자금의 명목과 금액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1962년 김종필·오하라 회담에서 합의되었다. 이 합의는 한국, 일본, 미국 정부 간의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기도 했다. 그 이후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양국의 합의는 양국 정부 협상단 간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협상단은 협상목표로 설정했던 무상자금의 50%이상인 1억 5천만불을 원자재로 도입할 수 있었다. 일본정

부의 협상단은 한국정부의 요구내용이 일본정부가 설정해왔던 기본원칙과 기존의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결국 거의 수용했다. 일본정부의 입장 전환에는, 무엇보다도, 한국 협상단이 제시한 원화자금을 조성하려는 목적과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한일 양국의 협상단은 양국의 입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였지만, 청구권협정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시키고, 부속서와 합의서에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교묘히 인정하는 타협의 지혜를 발휘했다. 즉 청구권협정에서는 일본정부의 기존 입장이 관철된 듯이 '일본국의 생산물과 일본인의 용역' 만으로 규정하고, 생산물의 재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제1의정서에서 일본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자본재 및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기타의 생산물"로 한다고 규정한 후에, 합의의사록(1)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내 자금 확보를 위하여, 1억 5천만불을 초과하는 자본재 이외의 생산물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가공수출도 인정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러한 한일 양국 협상단의 지혜로운 합의의 결과, 한국정부는 1976년까지 1,641억원의 원화자금을 확보해,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자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원화자금은 달러로 환산해 4억 4천 5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유무상 5억 달러에 더하여 4억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추가로 도입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렇지만 1,641억원의 원화자금 대부분이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재평가되어야만 한다. 한국정부는 대일청구권자금이 가능한 전국민에게 균점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는 명분에서 근대화와 산업화에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에서 합의된 유무상 대일청구권자금의 상당 부분은, 일본정부로부터 재산권이나 청구권을 배상 내지 보상받아야 하는 한국인 개인들을 위해서도 배분되어야 마땅했다. 청구권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대일청구권에는 정부, 기업은 물론, 개인의 몫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1963.12.9)「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협정요강(안)」, p.6.  
경제기획원(1964)「대일배상 및 차관 수입방식에 대한 검토내용의 중간보고-배상의 인  
수절차와 국내처리문제-」, p.13.  
경제기획원(1964.2.5)「대일청구권자금의 사용에 관한 방안(안)」, p.6.  
경제기획원(1976)「청구권자금백서」, p.221.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편(2008)「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Ⅳ」, 동북아역사재단, p.104.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편(2008)「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Ⅴ」, 동북아역사재단, pp.309-  
430.  
김광옥(1996)「한일회담 청구권의 성립과정과 전개에 대한 이해」『동아시아역사연구』1권,  
pp.133-169.  
대한민국정부(1965)「한일회담백서」, p.53.  
박태균(2005)「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한반도와 일본 : 한일회담 시기 청구권 문  
제의 기원과 미국의 역할」『한국사연구』131권, pp.35-59.  
심지연(2004)「한국정당정치사-위기와 통합의 정치」, 백산서당, pp.185-188.  
이원덕(1996)「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17-233.  
이현진(2011)「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의 해결 방식 - 경제협력 방식으로서의 전환과정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 22권, pp.73-97.  
外務省賠償部監修・賠償問題研究会編(1963)『日本の賠償』世界ジャーナル社, pp.23-24.

❖ 투고일 : 2014.12.31

❖ 심사완료일 : 2015.02.03

❖ 게재확정일 : 2015.02.09

## Abstract

## 대일 청구권자금 세부 항목의 협상 과정에 관한 연구

이이범

한국의 대일 청구권자금의 명목과 금액이 1962년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타결되었지만, 청구권자금 도입의 세부 항목에 관한 협상은 1965년 6월 한일회담 관련 제 협정이 타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일본정부는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으로 일본이 생산하는 자본재를 주로 제공하려고 했고, 한국정부는 당시 국내 경제상황에 절대로 필요했던 원화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가능한 원자재를 확보하려고 했다. 이러한 한국의 요구는 일본경제에 불리한 것이었고, 일본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제공했던 전후 배상의 방식과도 어긋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국내자금의 조성과 원자재 도입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그 결과 1억 5천불 이상의 원자재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했고, 원자재의 가공수출까지도 인정받았다. 이러한 원자재가 도입되면서 1976년까지 한국정부가 확보한 원화자금은 1,642억원에 달했고, 달러로 환산하면, 4억 4천 5백만불에 달했다.

**Key Words** : 한일관계, 한일국교정상화, 대일청구권자금, 한일경제관계

Abstract

A study on Korea-Japan Negotiations concerning Korea's  
Detailed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Lee, Rhee-beom

The Korea-Japan negotiations concerning Korea's detailed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continued from when Kim Jong-pil and Ohira held talks in November 1962 until an agreement was reached at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in June 1966. The Japanese government wanted to provide Japanese capital goods such as machinery and facilities in the subdivisions of Korea's property claims. But the Korean government demanded raw materials and things that would be of great advantage to Korea economically and that would enable it to raise the much-needed domestic funds required to proceed with economic development. The demands of Korea were consequently unfavorable to the Japanese economy and its exporters; and it was a departure from the post-war compensation methods by which Japan had indemnified East Asian countries. Korean negotiators did their utmost to explain the necessity for domestic funds and persuade Japanese negotiators. As a result, Korea-Japan arranged for the provision of raw materials and goods worth 150 million dollars, and Japan also agreed to an improvement in trade in these products. Ultimately, the domestic fun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raised by making full use of these amounted to 445 million dollars by 1976.

**Key Words** : Korea-Japan relations,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s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